

模倣·盜用行爲 指導啓蒙펴기로

消費者保護와 商去來秩序 確立위해

- ◎…… 特許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工業所有權 使用秩序確立을 위한 推進……◎
- ◎……計劃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積極 지도 계몽함으로써 國際信義를 높이고……◎
- ◎……善良한 消費者保護와 건전한 商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
- ◎……조하여 汎國民的 指導啓蒙을 펴기로 했다. ………………◎
- ◎…… 工業所有權使用秩序 分科委員會는 3月 29일 委員會를 개최하고 商標·……◎
- ◎……特許 도용실태조사 및 현장지도 단속을 치안본부, 시·도, 특허협회, 상……◎
- ◎……의, 기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委員會는 이와……◎
- ◎……아울러 商標·特許 도용에 대한 지도계몽도 적극 펴기로 했다. ………………◎

推進計劃

올해는 工業所有權 使用秩序確立을 위해 技術開發을 促進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건전한 기업 경쟁풍토를 조성하며, 우리 固有商標의 개발을 권장하며, 公正하고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 지도 계몽을 실시하며, 研修의 지속적 실시, 단속을 강화하여 악덕업자는 고발키로 했다. 그리고 工業所有權 사용秩序確立을 위해 不正競爭防止法을 改正 補完할 計劃이다.

關聯法 改正

지난 1961년에 制定된 不正競爭防止法의 내용을 現實與件에 맞추고, 최근 國際間에 問題가 되고 있는 紛爭素地를 제거하여 國際信義를 提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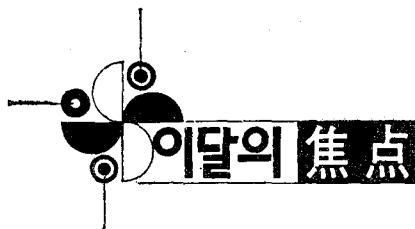
그리고 현행법은 國內의 모조·위조품이 만연되고 있는 현상을 効果적으로 방지할 수 없고,

파리協約의 内容과一致되지 않는점, 모조·위조 방지대책에 관한 國際的動向을 고려하여 改正 키로 했다.

이를 위해 特許廳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규정을 明文化 ▲그 범위의 확대 ▲有名商標의 例示·告示로 有名性 여부에 대한 분쟁 소지제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特許廳은 최근 輸入自由化정책에 편승하여 일부생산자나 판매업자들이 外國의 有名商標를 마음대로 불여 소비자를 속이고 사치풍조를 조장하여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外國人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外國 有名商標의 무단사용으로 국제신의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적극 지도 계몽함으로써 국제신의를 높이고 선량한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 계몽을 펴기로 했다.

지도 계몽은 특히·실용·의장 등의 모조·위조·도용안하기, 모조·위조품 취급 안하기, 모조·위조 외국상품 안사기, 外國商標 使用自制하기, 우리 고유상표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指導團束

특허청은 지난 3월 29일 공업소유권 질서 확립을 위해 시·도 상공과장 및 관련단체 임원회의를 열고 치안본부, 시·도 산업경제국과 특허협회, 商議, 企協의 협조를 얻어 4월 8일부터 13일까지 全國의 主要 27개 도시의 관광호텔,

백화점, 시장, 가게 등에 지도 계통반을 파견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有名商標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 관련기관의 임직원 및 유통업체 종사원에 대한 교육실시, 상표라벨 제조업자 등은 추적 조사를 해 악덕업주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서비스標 制度 改善한다

特許廳, 特許行政現代化 일환으로

- ◎…… 特許廳은 現行 서비스標가 12개류만 區分되어 있고, 細目이 定하여져 있다……◎
- ◎……지 않아 出願人이 自의에 의해 명칭을 定하거나, 產業의 發展에 따라급격……◎
- ◎……하 發展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업이 개발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標의 出……◎
- ◎……願이 증가되고 있어 審查의 統一性을 유지하기 위해 現行 서비스標 제도를……◎
- ◎……改善키로 하고 이에 대한 意見을 접수하고 있다. ………………◎

特許廳은 現行 서비스標 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가 登錄되어 있고 ▲서비스의 명칭이 상호 상이하여 用語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類區分이 애매한 서비스는 각각 상이한 류에 登錄되고 있어 이를 改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特許行政의 現代化 일환으로서 商標의 國際分類에로의 전환 등에 따른 制度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으며, 구체화된 서비스細目의 미확립으로 外國人出願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약해 십사상의 불편이 초래되어 왔다고 밝혔

다.

이를 改善하기 위해 特許廳은 서비스 細目을 기등록된 서비스名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分類하며, 현실적으로 指定商品과 指定서비스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 마찰되는 群은 서비스標와 商標의 유사구분에 의해 審查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표의 商品區分을 國際分類로 전환토록 하며 기등록된 권리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 更新時 유사상품 심사 기준에 따라 정리토록 했다. ♪